

광주고등법원 2022. 6. 29 선고 2021나2407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광주고등법원 2022. 6. 29 선고 2021나24072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9. 9 선고 2019가합12146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훈모, 박혜영

변론종결 2022. 3. 30.

판결선고 2022. 6. 29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9. 9. 선고 2019가합12146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서귀포시 C 답 564㎡에 관하여, 제1심 공동피고 A과 피고 B이 2018. 7. 31.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B은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18. 9. 28. 접수 제547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4쪽 7행의 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’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채무를 부담하고 있어(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및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제1심 공동피고 A의 채무는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, 아래 제3의 가. 2)항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보면, 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하여 있었고, 가까운 장래에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위 각 채무는 모두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)』

○ 제1심판결 8쪽 7~8행 ‘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’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

『오히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또는 그 관련 회사와 일정한 금전거래를 해오다가 어느 시점에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그에 따른

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의 경제적 여건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필요한 토지를 물색하다가 서로 교섭을 거쳐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, 을 제3호증 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간 직거래로 되어 있고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행위는 매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,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인규, 판사 김진환, 판사 차기현